수신 : 국토교통부 장관

참조 : 주택건설공급과장

제목 :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1조의2제1항 관련 층간소음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확대요청의 건

1. 관련 조문: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

제21조의2(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 교육) ①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500세대를 말한다.

2. 제안 취지 : 500세대 이사 1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단지의 관리종사자 인력현황이 제각각 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3. 문제점 : 1,500 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지원할 행정인력이 없고,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동별대표자 후보에 지원할 입주자가 없는 것이 대다수임.

4.. 개정안 건의 :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적 설치 최소 세대수를 1,500세대 이상으로 하여, 1,500세대 미만은 단지현황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

제21조의2(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 교육) ①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1,500세대를 말한다.